

---

# 2024년도 제9차 이사회

---

2024. 12. 10.

**KEF** 사단  
법인 대한승마협회

# 목 차

## I. 보고사항

- 1. 회장 직무정지 ..... 3
- 2. 임원 재적 변동 ..... 4

## II. 심의사항

- 1.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안 ..... 5
- 2.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 ..... 7

## III. 기타사항

보고사항	안건번호	의결 연월일	소관회의
	제9차 이사회-보고-제1호	2024. 12. 10.	2024년도 제9차 이사회

## 1 회장 직무정지

### □ 보고사항

- 회장 직무정지를 보고

### □ 보고사유

- 제41대 대한승마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회장 직무정지(2024. 12. 4.) 보고

### □ 주요내용

-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『제13조(후보자의 자격)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 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』
- 박서영 회장의 대한승마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(2024. 12. 4.)에 따른 회장 직무정지
- 협회 부회장 2명 중 연장자인 홍성택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 업무수행
- 협회 회장 선거 직후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 박서영 회장 업무 복귀 예정

보고사항	안건번호	의결 연월일	소관회의
	제9차 이사회-보고-제2호	2024. 12. 10.	2024년도 제9차 이사회

## 2 임원 재적 변동

### □ 보고사항

- 임원 사임 및 선임에 따른 재적 변동을 보고

### □ 보고사유

- 임원 사임 및 2022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(2022. 11. 30.)에서 회장 임기내에 임원 선임 권한 회장께 위임에 따른 임원 선임

### □ 주요내용

- 임원 6명 사임

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사임일	비고
부회장	손만호	-	2024. 11. 6.	
부회장	손창우	-	2024. 11. 29.	
전무이사	김종찬	-	2024. 11. 30.	
이 사	정성훈	-	2024. 11. 4.	
이 사	김문철	-	2024. 12. 9.	
행정감사	김의중	-	2024. 11. 3.	

- 이사 5명 추가 선임

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선임일
이 사	이용탁	-	· JIBS 대표이사	2024. 10. 4.
이 사	강근영	-	· 법무법인 삼을 대표변호사	2024. 10.17.
이 사	이동훈	-	·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	2024. 10.17.
이 사	안상현	-	· 주식회사 ADDD 대표	2024. 10.17.
이 사	배진효	-	· 발리오스승마클럽 상무	2024. 11. 7.

- 임원 임기: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전일

### ※ 임원 재적 변동 후 협회 임원 현황

총 24명(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이사 20명, 감사 1명)

심의사항
------

안건번호	의결 연월일	소관회의
제9차 이사회-심의-제1호	2024. 12. 10.	2024년도 제9차 이사회

## 1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안

### □ 의결주문

-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심의·주문함

### □ 제안사유

-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(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) 및 제4조(위원회의 구성)에 따른 선거운영위원회 구성

### □ 주요내용

-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
-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함
- 선거운영위원회 구성(안)

번호	직 위	성 명	직업 및 직위	비고
1	위 원	오기환	· 법률사무소 B&B 대표변호사	
2	위 원	최신영	·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	
3	위 원	이필우	· (주)에스앤에이컨설팅 사내이사	
4	위 원	유동주	· 머니투데이 더엘 사회부 팀장	
5	위 원	권정현	· 중원대학교 스포츠학과장	
6	위 원	황윤석	· 주) 엘지코리아 공동대표	
7	위 원	송연웅	· 주) 스포츠몬스터 대표이사	
8	위 원	최경민	· 신경주대학 말산업학과 교수	
9	위 원	김교호	· 김스승마클럽 대표	

-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위원회 임기: 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, 필요시 이사회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.

**□ 심의결과: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안 원안 승인**

심의사항	안건번호	의결 연월일	소관회의
	제9차 이사회-심의-제2호	2024. 12. 10.	2024년도 제9차 이사회

## 2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

### □ 의결주문

-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·주문함

### □ 제안사유

- 관련근거: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-9585(2024. 12. 4.) 『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』 및 동 규정 제3조제1항(회원종목단체의 규정 제·개정)에 따라 규정 개정 시 결과를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로 보고 요청

### □ 주요내용

- 경기인 등록 시기 분석 결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약 80%의 경기인이 등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인 등록 유효기간(제13조)은 학교운동부 구분 없이 일괄 해당연도 다음해 2월말 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등록 사각 지대 발생 최소화
- 기타 법령 표기 방식, 자구 수정 및 부칙 추가 등

### □ 신·구대조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b>제2조(정의)</b>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5. 15.> 1. ~ 14. “생략” 15. “관계단체”란 <a href="#">국민체육진흥법</a>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. ② “생략”	<b>제2조(정의)</b>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5. 15.> 1. ~ 14. “현행과 같음” 15. “관계단체”란 <a href="#">「국민체육진흥법」</a>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. ② “현행과 같음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법령 표기 방식 적용</li> </ul>
<b>제5조의2(경기인의 교육)</b> ① 경기인은 <a href="#">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</a>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	<b>제5조의2(경기인의 교육)</b> ① 경기인은 <a href="#">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</a>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법령 표기 방식 적용</li> </ul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.(신규 등록은 등록 후 2개월 이내 필수 이수)</p> <p>② “생략”</p>	<p>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. (신규 등록은 등록 후 2개월 이내 필수 이수)</p> <p>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	
<p><b>제10조(유효기간)</b>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<u>등록한 해당 연도 말일까지</u>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 &lt;개정 2023. 5. 15.&gt;</p> <p>1. <del>학교운동부 소속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회원종목단체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</del></p> <p>2. “생략”</p>	<p><b>제10조(유효기간)</b>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<u>협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, 다음해 1~2월 중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전일까지</u> 한다. 다만, 다음 <u>제2호에</u>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 &lt;개정 2023. 5. 15., 2024. 12. 10.&gt;</p> <p>1. <u>“삭제” &lt;2024. 12. 10.&gt;</u></p> <p>2.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월까지 기본 유효기간 확대</li> <li>• 예외조항에서 제1호 삭제</li> </ul>
<p><b>제21조(제한조치)</b> ① 이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와 <u>제5호</u>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“생략”</p>	<p><b>제21조(제한조치)</b> ① 이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<u>제6호까지</u>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<u>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</u>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24. 12. 10.&gt;</p> <p>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11조제1항제6조 신설에 따른 제한조치 추가 및 의미 명확화</li> </ul>
<p><b>&lt;신설&gt;</b></p>	<p><b>부 칙 (2024. 12. 10.)</b> (시행일) 이 규정은 <u>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</u> 시행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칙 신설</li> </ul>

□ 심의결과: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